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71
----------	------

발의연월일 : 2016. 11. 30.

발의자 : 박광온 · 윤관석 · 권미혁

박완주 · 김해영 · 강병원

서영교 · 김상희 · 도종환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禁治產者”를 “피성년후견인”으로, “限定治產者”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p> <p>1. 未成年者·<u>禁治產者</u>·<u>限定治產者</u> 2. ~ 6. (생 략)</p>	<p>第4條(缺格事由) ----- ----- -----.</p> <p>1. ----- <u>피성년후견인</u>-<u>피한정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p>